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관세청 운영지원과장의 분장사무에 중대산업재해 관련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 총괄·관리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을 증원하고, 관세청 소속기관인 인천세관에 인천항 세관 통합 검사장의 신설에 따른 신규 장비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3명(7급 3명) 및 지방세 고액·상습채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채납처분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3명(7급 3명)을 각각 증원 하려는 내용으로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3. 2. 00. 공포·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조직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관세청 국제관세협력국 국제협력 총괄과와 자유무역협정집행과의 분장사무 일부를 조정하고, 청주세관, 울산세관, 제주세관 및 인천공항국제우편세관 하부조직의 분장사무를 일부 조정하며,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관세청 소속기관인 중앙관세분석소의 사서직렬 정원 1명(6급 1명)을 공업직렬 정원으로 전환하고, 관세청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설치한 감찰팀의 존속기한을 2023년 3월 22일까지에서 2025년 3월 22일까지로 2년 연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2023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

다. 합 의 :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및 신·구정원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3. 2. 10. ~ 2. 17.)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제12호 및 제1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14호부터 제18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12. 관세상담 서비스 제공을 위한 고객지원센터의 운영

13. 관세고객 상담을 통한 제도개선 사항의 수집 및 관리

제7조제4항제11호 및 제1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13호부터 제17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자유무역협정의 집행에 관한 국내외 실태, 자료, 통계 및 정보의 분석·연구에 관한 사항

12. 자유무역협정 집행 업무의 기획·총괄

13. 자유무역협정 인증수출자(認證輸出者) 제도의 기획 및 운영

14. 원산지증명서의 발급 및 원산지증명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15. 자유무역협정관세, 일반특혜관세를 적용하기 위한 원산지의 확인 및 원산지확인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16. 원산지 관련 서류의 전자적 유통 촉진에 관한 사항

17. 자유무역협정관세의 적용 제한자 등 관리에 관한 사항

제18조제2항 중 “제16항제11호”를 “제16항제2호·제3호·제11호”로 한다.

제19조제2항 중 “제12조제16항제11호”를 “제12조제16항제2호·제3호·제11호”로 한다.

제23조제2항 중 “제16항제11호”를 “제16항제2호·제3호·제11호”로 한다.

제25조제2항제1호 중 “제1항제1호”를 “제1항제1호 및 제12조제16항제2호·제3호”로 한다.

별표 4 중 총계 “365”를 “366”으로 하고, 일반직 계 “364”를 “365”로 하며, 행정사무관 “44”를 “45”로 한다.

별표 4의2 중 총계 “373”을 “374”로 하고, 일반직 계 “372”를 “373”으로 하며, 행정사무관 “45”를 “46”으로 한다.

별표 6 “사서주사 1”을 삭제하고, 공업주사 “11”을 “12”로 한다.

별표 6의2 “사서주사 1”을 삭제하고, 공업주사 “11”을 “12”로 한다.

별표 8 중 총계 및 일반직 계 “4,795”를 각각 “4,801”로 하고, 관세주사보 “880”을 “883”으로 하며, 공업주사보 “52”를 “55”로 한다.

별표 8의2 중 총계 및 일반직 계 “4,805”를 각각 “4,811”로 하고, 관세주사보 “881”을 “884”로 하며, 공업주사보 “52”를 “55”로 한다.

별표 10 제2호가목2)의 평가기간란 및 같은 목 3)의 평가기간란 중 “2024년 9월 30일”을 각각 “2024년 12월 31일”로 한다.

기획재정부령 제344호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기획재정부령 제576호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기획재정부령 제668호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기획재정부령 제830호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및 기획재정부령 제857호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규칙 일부개정령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제3조 중 “2023년 3월
 22일”을 “2025년 3월 22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7조(국제관세협력국) ①·② (생략) ③ 국제협력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11. (생략) 12. <u>자유무역협정의 집행에 관한 국내외 실태, 자료, 통계 및 정보의 분석·연구에 관한 사항</u> 13. <u>자유무역협정 집행 업무의 기획·총괄</u> 14. <u>자유무역협정 인증수출자(認證輸出者) 제도의 기획 및 운영</u> 15. <u>원산지증명서의 발급 및 원산지증명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u> 16. <u>자유무역협정관세, 일반특혜관세를 적용하기 위한 원산지의 확인 및 원산지확인위원회</u> <u>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u> 17. <u>원산지 관련 서류의 전자적 유통 촉진에 관한 사항</u> 18. <u>자유무역협정관세의 적용</u>	제7조(국제관세협력국)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1. ~ 11. (현행과 같음) 12. <u>관세상담 서비스 제공을 위한 고객지원센터의 운영</u> 13. <u>관세고객 상담을 통한 제도 개선 사항의 수집 및 관리</u> <u><삭 제></u> <u><삭 제></u> <u><삭 제></u> <u><삭 제></u> <u><삭 제></u> <u><삭 제></u>

장) ① (생 략)	장) ① (현행과 같음)	같은 항 제6호(수입물품의 관세	-----
② 조사심사과장은 제12조제16	② ----- 제12조제16항	평가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	-----
항제11호부터 제14호까지, 제16	제2호 · 제3호 · 제11호-----	부터 제14호까지, 같은 조 제21	-----
호, 제17호, 제17호의2, 같은 조	-----	항 각 호, 같은 조 제23항제1호	-----
제19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같	-----	부터 제10호까지, 제12호부터	-----
은 항 제6호(수입물품의 관세평	-----	제16호까지, 같은 조 제25항제1	-----
가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부	-----	호 · 제3호 · 제6호 및 제8호부	-----
터 제14호까지, 같은 조 제21항	-----	터 제10호까지의 사항을 분장한	-----
각 호, 같은 조 제23항제1호부	-----	다.	-----
터 제10호까지, 제12호부터 제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16호까지, 같은 조 제25항제1호,	-----	제25조(인천공항국제우편세관의	제25조(인천공항국제우편세관의
제3호, 제6호 및 제8호부터 제	-----	과단위 사무분장) ① (생 략)	과단위 사무분장) ① (현행과
10호까지의 사항을 분장한다.	-----		같음)
	-----	② 우편검사과장은 다음 각 호	② -----
③ · ④ (생 략)	③ · ④ (현행과 같음)	의 사항을 분장한다.	-----
제23조(제주세관의 과단위 사무분	제23조(제주세관의 과단위 사무분	1. 제18조제2항의 사항(제1항제	1. -----제1항제
장) ① (생 략)	장) ① (현행과 같음)	1호의 사항은 제외한다)	1호 및 제12조제16항제2호 ·
② 조사심사과장은 제12조제5	② -----		제3호-----
항제4호, 같은 조 제6항제12호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 제13호, 같은 조 제9항제1호	-----	기획재정부령 제344호 관세청과	기획재정부령 제344호 관세청과
부터 제15호까지, 제18호부터	-----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제20호까지, 같은 조 제12항제1	-----	개정령 부칙	개정령 부칙
호부터 제3호까지, 같은 조 제	----- 제16		
16항제11호부터 제14호까지, 제	항제2호 · 제3호 · 제11호-----	제3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	제3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
16호, 제17호, 제17호의2, 같은	-----	구의 존속기간) 이 규칙 시행	구의 존속기간) -----
조 제19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		

신·구정원대비표

[별표 4]

관세청 공무원 정원표(제33조제1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365	366	+1
일반직 계	364	365	+1
행정사무관	44	45	+1

당시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른 총액인건비제로 활용·운영하고 있는 감찰팀은 2023년 3월 22일까지 존속하며,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감찰팀의 소관사무는 감사담당관이 수행한다.	----- ----- ----- ----- 2025년 3월 22일----- ----- -----.
---	---

[별표 4의2]

관세청 공무원 정원표(제33조제1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		.	.	
			<u>373</u>	<u>374</u>	+1
	.		.	.	
일반직 계	.		.	.	
			<u>372</u>	<u>373</u>	+1
	.		.	.	
행정사무관	.		.	.	
			<u>45</u>	<u>46</u>	+1
	.		.	.	
	.		.	.	

[별표 6]

중앙관세분석소 공무원 정원표(제34조제2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	
	.		.	.	
		<u>사서주사</u>	<u>1</u>	<u><삭 제></u>	-1
공업주사			<u>11</u>	<u>12</u>	+1
	.		.	.	
	.		.	.	

[별표 6의2]

중앙관세분석소 공무원 정원표(제34조제2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		
	•		•		•		
사서주사			<u>1</u>		≤삭 제>	-1	
공업주사			<u>11</u>		<u>12</u>	+1	
	•		•		•		
	•		•		•		

[별표 8]

세관관서 공무원 정원표(제34조제4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		
총계			<u>4,795</u>		<u>4,801</u>	+6	
일반직 계			<u>4,795</u>		<u>4,801</u>	+6	
	•		•		•		
	•		•		•		
관세주사보			<u>880</u>		<u>883</u>	+3	
	•		•		•		
	•		•		•		
공업주사보			<u>52</u>		<u>55</u>	+3	
	•		•		•		
	•		•		•		

[별표 8의2]

세관관서 공무원 정원표(제34조제4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 <u>4,805</u>	• <u>4,811</u>	+6
일반직 계	<u>4,805</u>	<u>4,811</u>	+6
•	•	•	
•	•	•	
관세주사보	<u>881</u>	<u>884</u>	+3
•	•	•	
•	•	•	
공업주사보	<u>52</u>	<u>55</u>	+3
•	•	•	
•	•	•	